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
	배포일시	2018. 9. 11.(화) / 총4매(본문3)
담당 부서	교통안전복지과	담당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박정수, 사무관 정규철 • ☎ (044)201-3870
보 도 일 시	2018년 9월 12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11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간 차별없이 이용 지자체별 상이한 운영 방식·절차의 최소기준 및 표준절차 마련

- ◆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은 365일 24시간 원칙
- ◆ 요금(관내)은 도시철도/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내 수준
- ◆ 인접 지자체까지 운행하는 것을 원칙
- ◆ 휠체어 이용 않는 교통약자 위해 택시(바우처) 적극 활용

□ 앞으로 휠체어 탑승장비 를 장착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.

○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*이 지자체마다 상이**하게 운영되어 지역별로 서비스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「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」를 마련하여 시행한다.

* 특별교통수단 :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

**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16조제8항 :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

○ 표준조례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, 요금수준, 운행범위 등에 대한 최소기준 및 표준절차 등을 명시한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(조례)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적극 검토*되어 왔으며,

* 「이동불편 교통체계 개선기술 개발」: '15.8~'19.6, 연구총괄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

-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'17.11월부터 지자체, 관련 전문가 및 교통약자 관련단체 등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친 세미나, 간담회, 정책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.

□ 표준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운행방식

- 이용자 특성, 차량부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에 임차·바우처 택시를 적극 도입하고, 특별교통수단(휠체어 승강장비 有)과 임차·바우처 택시(승강장비 無)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< 특별교통수단등 차량 유형 >

구분	특별교통수단	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(임차택시)	일반택시 (바우처택시)
휠체어 탑승설비	있음	없음	없음
운영주체	지자체	지자체	택시사업자

② 이용대상 심사

-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기 위한 자격과 관하여 대중교통 이용 곤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심사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하였다.

③ 이용시간

- 상시(365일 24시간)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, 여건상 상시 운영이 곤란한 지자체는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계획을 명시토록 하였다.

④ 이용요금

-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상한선을 대중교통요금* 기준으로 2배 이하로 명시하되, 여건에 따라 즉시 시행이 곤란한 지자체는 별도 시행 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하도록 하였다.

* 관내요금 : 도시철도 또는 시내버스요금의 2배 이내
관외요금 : 시외버스요금의 2배 이내

⑤ 운행지역

- 관할 행정구역 이외 인접생활권*까지를 기본 운행지역으로 하되, 차량여건이나 수요 등에 따라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* 인접생활권 : ① 행정구역이 연접한 지자체 ② 기초 지자체의 경우 도내 전체 ③ 수도권 내 지자체의 경우 동일 생활권으로 볼 수 있는 수도권 전체

□ 박무익 종합교통정책관은 “이번 표준조례는 현행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체계 하에서 적용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것”이라면서, “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부족 등 불편사항을 일시에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

-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면 교통약자가 거주지에 따른 차별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”고 밝혔다.

- 또한, “장애인 등급제의 개편(19.7, 복지부)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법정 보급대수의 재산정 등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.”고 덧붙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교통 안전복지과 정규철 사무관(☎ 044-201-387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 마련



현황 및 문제점

차량 대기시간

콜택시 신청 후, 차량 도착 시까지 긴 대기시간

차는... 언제 오지?

차량 운행범위

지자체 마다 서로 다른 운행범위

집에 되돌아 갈 수가 없어.

콜택시 이용요금

지자체 마다 서로 다른 요금수준과 요금체계

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?

부족해요

콜택시 운영시간

지자체 마다 서로 다른 센터·콜택시 운영시간

꼭 필요할 때, 이용을 못하네.

표준조례(안)

- 이용대상·자격 명확히 하자 ·

표준화된 자격심사절차 마련

- 운행지역·범위 재정립하자 ·

운행지역 및 범위 규정, 광역 이동시 운행방식 제시

- 다양한 형태로 운행하자 ·

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방식, 종류에 따라 정의·분류

-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·

상시운영기준 제시 (1년 365일, 1일 24시간)

- 바우처 택시를 활용하자 ·

합체어용자 특별교통수단

비합체어용자 바우처택시

- 요금 수준 가이드 제시하자 ·

관내/관외요금 상한선 제시 (대중교통요금의 2배 이내)